

#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규정(안) 검토보고

운영위원회(구의회사무국)

의안번호	제20호
제 출 자	이호건 의원 외 13명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(안)
검 토	전문위원 유 천 곤

## 1. 제안이유

『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』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성북구 의회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제1조 ~ 제2조 : 목적 및 정의

나. 제3조 :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

- 의회사무국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

다. 제4조 ~ 제10조 :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

-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 및 조치사항

-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

-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및 조치

- 가족 채용 제한 대상

- 수익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

-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
- 라. 제11조 ~ 제16조 :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신고처리 등
  - 신고·신청 등의 기록 및 관리
  - 위반행위 신고 방법
  - 이첩 또는 송부받은 신고의 처리
  - 종결처리
  -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
- 마. 제17조 ~ 18조 : 교육 및 상담
  - 교육 및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
- 바. 제19조 :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 구성
- 사. 제20조 : 징계양정 기준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“해당 없음”
- 다. 입법예고 : “해당 없음”

### 4. 검토의견

- 본 규정(안)은 제정된 『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』이 금년 5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성북구 지방의회 공직자의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
- 주요 내용은 제3조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의회사무국장을 지정하고, 제4조에서 제16조까지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관련한 신고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, 제17조에서 19조까지는 이해충돌방지 관련 교육과 상담, 자문기구 구성 운영에 대하여, 제20조는 징계양정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.
-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, 본 규정(안)은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됨.